

#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10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박기재, 노승재, 경만선,  
김춘례, 오한아, 황규복,  
안광석, 송정빈, 이영실 의원  
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지체장애인 등의 정보취약계층은 신체적 한계 등으로 매장 등에서의 구매 뿐 아니라 키오스크(Kiosk)를 이용한 구매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.
- 이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주문, 결제 등이 가능한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를 개발·생산하도록 하고,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·생산 및 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규정함.(안 제6조의2제1호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 
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 
「전기통신사업법」  
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 : 개정안 및 신·구 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호 중 “정보통신제품”을 “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정보격차 해소 지원) 시 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 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<u>정보통신제품의</u> 개발·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·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 사업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6조의2(정보격차 해소 지원) 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제1호의 ‘정보통신제품’ 을 ‘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’ 로 변경하여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‘정보통신서비스’ 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  - 안 제6조 제2항 제2호(정보격차 해소지원)에 따라 ‘정보통신제품’ 을 ‘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’ 로 변경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‘정보통신서비스’ 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비용 추계가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무관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